순천향대학교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2026. 12. 1.자)

1 2026. 12. 1.「순천향대학교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유형 : 심의
발의 : 기획전략팀

□ 주요사항

개정조항	세부내용
제5조	[학칙 내 표기된 부설기관 현행화] ○ 단과대학 부설기관 현행화 (공과대학, 향설교양대학, 창의라이프대학 산하 기관 추가) ○ 특수대학원 부설기관 현행화 (미래융합대학원 – 미래융합연구소)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2012.4.1., 2012.5.31., 2017.4.1.>	**제5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2012.4.1., 2012.5.31., 2017.4.1.>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단과대학 부설기관 : 순천향의학연구소, 환경산업의학연구소, 향설의학시뮬레이션센터, 인체유래물은행, 향설의학교육혁신센터, 의과대학실험동물센터, 기초과학연구소, 한국자생동물자원활용융복합연구소, SCH특수아동교육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SCH경제경영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SW융합과학연구소, SCH의료과학연구소, SCH융합과학연구소, 통합간호교육시뮬레이션센터, 세포외입자연구센터 <개정 2013.3.1., 2015.11.1., 2017.4.1., 2018.6.1., 2018.9.1., 2019.3.1., 2019.9.1., 2021.1.1., 2021.3.1., 2021.9.1., 2022.9.1., 2025.7.1.>	2. 단과대학 부설기관 : 순천향의학연구소, 환경산업의학연구소, 향설의학시뮬레이션센터, 인체유래물은행, 향설의학교육혁신센터, 의과대학실험동물센터, 기초과학연구소, 한국자생동물자원활용융복합연구소, SCH특수아동교육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SCH경제경영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SW융합과학연구소, SCH의료과학연구소, SCH융합과학연구소, 통합간호교육시뮬레이션센터, 세포외입자연구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향설인문학진흥원, 향설교양교육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SRC센터, 글로컬소통역량강화센터, 사고·표현역량센터, AI·디지털역량센터, 사회공헌·나눔센터,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재직자후진학거점센터, 건강운동관리사연수원, 일학습병행공동훈련사업단,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선도대학육성사업단 <개정 2013.3.1., 2015.11.1., 2017.4.1., 2018.6.1., 2018.9.1., 2019.3.1., 2019.9.1., 2021.1.1., 2021.3.1., 2021.9.1., 2022.9.1., 2025.7.1., 2026.12.1.>
3. 일반대학원장 : BK21추진센터(산하 BK21사업운영팀), 대학원혁신추진센터(산하 대학원혁신팀) <신설 2021.1.1., 2023.4.14.>	3. 일반대학원장 : BK21추진센터(산하 BK21사업운영팀), 대학원혁신추진센터(산하 대학원혁신팀) <신설 2021.1.1., 2023.4.14.>
4. 교육대학원 부설기관 : 중등교육연수원 <개정 2021.1.1.>	4. 교육대학원 부설기관 : 중등교육연수원 <개정 2021.1.1.>
5. 건강과학대학원 부설기관 : 순천향상담및임상심리센터 <개정 2022.9.1., 2026.3.1.>	5. 건강과학대학원 부설기관 : 순천향상담및임상심리센터 <개정 2022.9.1., 2026.3.1.>
6. 창의라이프대학 부설기관 :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재직자후진학거점센터, 건강운동관리사 연수원, 듀얼공동훈련센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사업단 <신설 2015.1.1., 2015.5.1., 2015.6.1., 2016.6.1., 2020.7.1., 2021.9.1., 2022.9.1., 2026.3.1.>	6. 미래융합대학원 부설기관 : 미래융합연구소 <신설 2015.1.1.> <개정 2015.5.1., 2015.6.1., 2016.6.1., 2020.7.1., 2021.9.1., 2022.9.1., 2026.3.1., 2026.12.1.>
7. 삭제 <개정 2008.10.22., 2022.9.1.>	7. 삭제 <개정 2008.10.22., 2022.9.1.>
<신 설>	**부 칙** 이 학칙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26. 12. 1.「순천향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

유형 : 심의
발의 : 대학원학사팀

□ 주요사항

개정조항	세부내용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일반·특수·전문대학원 간 명칭·적용범위 명확화] ○ (기존) '대학원' 약어는 일반대학원을 통칭 (변경) 각 대학원으로 정비하여 적용범위 명확화
제19조	[대학원생 제적에 대한 사항] ○ 기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5조(제적)에 대한 내용 학칙에 구체화
제27조	[대학원 내 타 학과(전공) 수광과목 선택사항 명확화] ○ (일반, 특수, 전문대학원) 동 대학원 내 타 학과(전공) 3과목 수강 가능 ○ (일반, 전문대학원) 대학원 간 교차로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 수강 가능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본 대학교에 설치된 일반대학원은 순천향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특수대학원은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교육대학원"이라 한다),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이하 "건강과학대학원"이라 한다),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이하 "법과학대학원"이라 한다), 순천향대학교 미래융합대학원(이하 "미래융합대학원"이라 한다), 순천향대학교 드론시큐리티융합대학원(이하 "드론시큐리티융합대학원"이라 한다. 전문대학원은 순천향대학교 AI의료융합전문대학원(이하 "AI의료융합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1.3.1., 2015.3.1., 2020.3.1., 2021.10.15., 2025.9.1., 2026.3.1., 2026.10.1.>	**제2조(명칭)** 본 대학교에 설치된 일반대학원은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 "일반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특수대학원은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교육대학원"이라 한다),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이하 "건강과학대학원"이라 한다),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이하 "법과학대학원"이라 한다), 순천향대학교 미래융합대학원(이하 "미래융합대학원"이라 한다), 순천향대학교 드론시큐리티융합대학원(이하 "드론시큐리티융합대학원"이라 한다. 전문대학원은 순천향대학교 AI의료융합전문대학원(이하 "AI의료융합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1.3.1., 2015.3.1., 2020.3.1., 2021.10.15., 2025.9.1., 2026.3.1., 2026.10.1., 2026.12.1.>
제3조(교육목적) ① 대학원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인간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최신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고도 기술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나아가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②~⑪ (생략)	**제3조(교육목적)** ① 일반대학원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인간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최신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고도 기술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나아가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2.1.> ②~⑪ (현행과 같음)
제4조(과정)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이 연계된 과정(이하 "학·석사연계과정"이라 한다), 학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이 연계된 과정(이하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이 과정 안에 대학원과 연구원(소) 등과의 협동과정인 학연산협동과정과 대학원 필요에 따라 학과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 2026.9.1.> ② (생략)	**제4조(과정)** ① 각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이 연계된 과정(이하 "학·석사연계과정"이라 한다), 학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이 연계된 과정(이하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이 과정 안에 대학원과 연구원(소) 등과의 협동과정인 학연산협동과정과 대학원 필요에 따라 학과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 2026.9.1., 2026.12.1.>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입학전형방법) ① 대학원 입학전형 방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한다. ②~③ (생략)	**제9조(입학전형방법)** ① 각 대학원 입학전형 방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12.1.>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재입학)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재입학)**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1.>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휴학) ①~② (생략) ③ 휴학은 재학 중 총 4개 학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당초 신청한 휴학기간의 만료 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임신·출산·육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학 중 휴학기간이 총 4개 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 학기의 범위 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별도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⑤ (생략)	**제17조(휴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휴학은 재학 중 총 4개 학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당초 신청한 휴학기간의 만료 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임신·출산·육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학 중 휴학기간이 총 4개 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 학기의 범위 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별도로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2.1.> 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제적) 학생이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적된다. <개정 2016.12.1.>	**제19조(제적)**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제적으로 처리한다. ① 학적을 위조한 자 ② 성행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③ 시험을 대리로 행한 자와 이를 부탁한 자 ④ 수업을 방해하거나 선동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⑤ 매 학기 등록금 최초 징수기일 종료 후 2개월(학교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3항에 의거 납입기일이 연장된 자는 그 최종 납입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⑥ 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이 넘도록 신고 없이 복학치 않은 자 ⑦ 질병 및 그 밖의 이유로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⑧ 개강 후 1개월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전문개정 2026.12.1.]
제21조의1(재학연한)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21조의1(재학연한)**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개정 2026.12.1.>
제24조(수업) ①~② (생략) ③ 대학원 의학과에 합동강의를 실시하며, 합동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대학원 합동강의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 2019.12.1.> ④~⑤ (생략)	**제24조(수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대학원 의학과에 합동강의를 실시하며, 합동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대학원 합동강의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 2019.12.1., 2026.12.1.> ④~⑤ (현행과 같음)
제25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생략) ② 대학원 학생의 경우, 하위과정에서와 다른 전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대학원 재학 중 하위과정에서 보충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보충과목은 12학점 범위 내,에서 별도로 이수할 수 있다.(특수대학원 제외) 단, 보충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 가산되지 않는다. ③~④ (생략)	**제25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대학원 학생의 경우, 하위과정에서와 다른 전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대학원 재학 중 하위과정에서 보충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보충과목은 12학점 범위 내에서 별도로 이수할 수 있다.(특수대학원 제외) 단, 보충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 가산되지 않는다. <개정 2026.12.1.>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수강과목) 각 대학원 학생은 소정의 교과과정의 수강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타 학과(전공) 교과목을 재학 중 3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제27조(수강과목)** ① 각 대학원 학생은 소정의 교과과정의 수강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타 학과(전공) 교과목을 재학 중 3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 학생은 본교 전문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전문대학원 학생은 본교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전공과 관련하여 수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교과목 개설 학과(전공)를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12.1.]
제28조(학부와의 연계) 대학원의 경우, 학과에서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학사과정의 학생은 대학원 개설과목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부 상 그 사실이 등재되나 대학 졸업학점으로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대학원 진학 후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제28조(학부와의 연계)**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과에서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학사과정의 학생은 대학원 개설과목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부 상 그 사실이 등재되나 대학 졸업학점으로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대학원 진학 후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개정 2026.12.1.>
<신 설>	**부 칙** 이 학칙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2026. 12. 1.「순천향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개정에 관한 사항

유형 : 심의
발의 : 대학원학사팀

□ 주요사항

개정조항	세부내용
제25조	[대학원생 제적에 대한 사항] ○ 기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5조 삭제 → 대학원 학칙 제19조로 이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제적)**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제적으로 처리한다.~~ ~~① 학적을 위조한 자~~ ~~② 성행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③ 시험을 대리로 행한 자와 이를 부탁한 자~~ ~~④ 수업을 방해하거나 선동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⑤ 매 학기 등록금 최초 징수기일 종료 후 2개월(학교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3항에 의거 납입기일이 연장된 자는 그 최종 납입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16.12.1., 2018.9.1.>~~ ~~⑥ 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이 넘도록 신고 없이 복학치 않은 자 <개정 2016.12.1., 2022.1.1.>~~ ~~⑦ 질병 및 그 밖의 이유로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22.1.1.>~~	**제25조** 삭제<2026.12.1.>
<신 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일정 : 2026. 11. 17.(화) ~ 2026. 11. 19.(목)

□ 의견 제출 방법 : 〈붙임〉 의견서 제출 (2026. 11. 19.(목) 10:00까지)

· 제출처 : 순천향대학교 기획처 기획전략팀 / hyunjun@sch.ac.kr / (Fax) 041-530-1019

〈붙 임〉

의 견 서

「순천향대학교 학칙」 및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의견 내용

관련 규정	순천향대학교 학칙 ( )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학칙 ( )
개정 조항	___ 조
찬반 여부	찬성 ( ) / 반대 ( )
사유	

2. 제출자 정보

구 분	교수 ( ), 직원 ( ), 학생 ( ), 기타 ( )
소속 및 직위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연락처	

2026년 월 일

순천향대학교 기획처장 귀하